

「금융재산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금융재산을 가구구성원수를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2) 행정예고: '23.12.06.~12.18.(13일간)

3) 규제심사: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000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4호, 2021.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재산 기준」 일부개정안

「금융재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2024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천원 추가

제2호 중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부 칙 <제2023- 호, 2023. 00. 00.>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1.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2024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 (천원) <table><tr><td>가구원수</td><td>1인</td><td>2인</td><td>3인</td><td>4인</td><td>5인</td><td>6인</td></tr><tr><td>금액</td><td>8,228</td><td>9,682</td><td>10,714</td><td>11,729</td><td>12,695</td><td>13,618</td></tr></table>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천원 추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